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4. 1 선고 2019나56959 판결 [부당이득금 반환]

재판경과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4. 1 선고 2019나56959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5. 28 선고 2018가단207353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일 담당변호사 최재연

피고, 피항소인B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조흥

변론 종결2021. 3. 4.

판결 선고2021. 4. 1.

제1심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5. 28. 선고 2018가단207353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주위적으로 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예비적으로 백미(2016년산, 철원오대벼, 상등품) 1,547포대(포대당 20kg) 및 이에 대한 2016.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백미를 지급하며, 위 백미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능일 때에는 백미 1포대 당 42,000원의 비율로 환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원고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의 대표자이고, 피고는 강원 철원군에서 벼농사를 짓는 농업인인데, 원고가 피고의 계좌로 2016. 9. 22. 4,500만 원과 2016. 10. 4. 2,000만 원, 합계 6,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 1) 원고가 2016. 9. 22. 피고에게 4,500만 원을 대여하면서 피고로부터 같은 해 10.경 수확할 철원오대쌀 20kg 1,071포대로 변제받기로 하였고, 2016. 10. 4. 피고에게 2,000만 원을 추가로 대여하면서 위 철원오대쌀 20kg 476포대로 변제받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대여약정'이라 한다)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변제하기로 약정한 철원오대쌀 20kg 합계 1,547포대(이하 '이 사건 쌀'이라 한다)를 공급하지 아니하였다.
- 2) 주위적으로, 피고의 이 사건 쌀의 공급 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이 사건 대여약정을 해제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원고가 지급한 6,5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 3) 예비적으로 가사 이 사건 쌀의 공급 의무가 이행불능에 이르지 않았다면 피고는 이 사건 대여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쌀을 공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1) 피고는 2016. 9. 5.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수확할 철원오대쌀 1,800가마니를 3억 2,40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구두로 체결하면서, 원고로부터 계약금 6,500만 원은 2016. 9.까지, 중도금 2억 원은 2016. 10. 15.까지, 나머지 잔금 5,900만 원은 2016. 11.까지 각 지급받기로 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6,500만 원은 대여금이 아닌 쌀 매매계약의 계약금이다

2) 원고와 피고는 쌀 매매계약에서 E조합의 쌀 수매기간이 2016. 10. 15.까지인데, 위 기간이 경과되면 피고가 쌀 수매를 청구하지 못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점에서 계약금 6,500만 원을 위약금으로 약정하였다.

3) 피고는 원고가 2016. 10. 15.까지 중도금 2억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여러 차례 지급을 최고하였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쌀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6,500만 원은 위약금으로 몰취하였다.

4) 가사 쌀 매매계약의 위약금 약정이 없었다 하더라도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피고의 손해배상채권으로 원고의 계약금반환 채권과 상계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계약금은 남아 있지 아니하다.

3. 판단

가. 6,500만원이 대여금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

살피건대, 원고가 위 돈을 대여금으로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4호증, 을 제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를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16. 11.경 대여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한 바 없이 '쌀을 언제 가져가면 되냐?', 선 지급한 쌀값에 대한 쌀을 달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사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쌀을 매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6,5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그렇다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6,500만 원은 대여금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의 주장과 같이 쌀 매매계약의 대금 일부로 지급되었음이 인정된다.

나. 6,500만 원이 위약금으로 몰취되었는지 여부

을 제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제1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4,500만 원을 받은 피고가 2016. 10. 4.경 원고에게 쌀 매매계약의 계약금으로 2,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할

것을 요청하면서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계약금을 몰취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 원고가 이를 받아드려 피고에게 2,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사실을 종합하면 원고가 매매대금의 중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계약금으로 지급한 6,500만 원을 몰취하기로 약정하였음이 인정된다. 또한 위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위 6,500만 원 외에 나머지 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쌀을 가져가라고 연락하였으나 원고가 개인 사정으로 1개월 후에 가져가겠다고 하면서 쌀의 수량을 미룬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6,500만 원은 위와 같은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위약금으로 몰취되었다(가사 원고와 피고 사이의 쌀 매매계약에 위약금 약정이 없었다 하더라도, 을 제2, 3호증, 을 제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와 같은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피고는 수확한 쌀을 E조합에 수매신청을 하지 못하게 되어 이를 보관하다가 매도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결국 합계 8,320만 원(= 매도차액 5,620만 원 + 창고보관비 등 2,700만 원)의 손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를 자동채권으로 원고의 6,500만 원 반환 채권과 상계하면 원고의 매매대금 반환 채권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음이 계산상 명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정민

판사김정현

판사강창호